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지위 및 역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원에 투고된 모든 형태의 원고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인 위반 사실 적발 활동과 더불어 위반에 관한 제보를 통해 심의활동을 유지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자의 익명성과 소명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위반에 관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은 편집위원이 겸임하되 심의 사항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에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 ③ 심의 안건이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회장이 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제3조 심의의 진행

- ① 안건은 위원회 자체적인 조사활동 및 위반에 관한 제보를 통해 상정되고, 이를 근거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이전에 심의 예정 안건의 해당자에게 심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 사항에 관한 자료와 함께 해당자의 소명서를 검토한다.
- ③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해야만 하며, 정당한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의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행위가 심의를 받는 해당 연구자 및 위반에 관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조 조치와 징계

본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아래 각 호의 조치와 징계를 실행한다.

- ① 본회의 간행물에 대한 해당 투고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 확정으로부터 5년간 본회에서 간행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한 투고를 금지한다.
- ② 본회의 홈페이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③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와 징계 내용을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사항과 조치 및 징계 내용을 문서화하여 5년간 보관하며, 최종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연구윤리 위반 내용, 심의 위원 명단과 심의 절차, 위반 사실 확정의 근거, 해당 연구자의 소명에 대한 처리 내용, 위반 사실 확정 후 조치 및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